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龍萬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に 관한 研究

A Study on Ecology Preservation &
The Land Utilization of DMZ and It's Borders

200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不動產學科

不動產學專攻

李 基 燮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龍萬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に 관한 研究

A Study on Ecology Preservation &
The Land Utilization of DMZ and It's Borders

위 論文을 不動產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不動產學科

不動產學專攻

李 基 燮

李基燮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朴炳植 

심사위원 安正根 

심사위원 李龍萬 

- 目 次 -

제 1 장 序 論	1
제 1 절 本 研究의 目的과 意義	1
제 2 절 調 査 研究의 範圍 및 方向	2
1. 地域的 範圍	2
2. 學術的 範圍	2
3. 研究의 方向	2
- 韓國 戰爭生態界 保存 및 土地活用을 위한 節次圖	
제 2 장 DMZ를 包含한 接境地域의 現況	4
제 1 절 DMZ 및 接境地域의 一般的 現況	4
1. DMZ 由來의 地域特性	4
2. 地理的 現況	4
3. 現 實態	6
제 2 절 DMZ 및 接境地域의 生態界 特需現	7
1. 植物生態계의 現況	7
2. 動物生態계의 現況	9
제 3 절 DMZ 및 接境地域내의 文化遺蹟지 및 軍事地域 現況	14
1. 文化遺蹟地	14
2. 軍事地域 現況	14
제 3 장 DMZ를 包含한 接境地域의 問題點 및 向後 解決課題	16
제 1 절 DMZ를 包含한 接境地域의 問題點	16
1. 保存과 開發의 딜레마	16
2. 相反된 各界의 움직임	16
3. 不明確한 地區指定	18
제 2 절 向後 解決課題	18

제 4 장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所有權 問題 및 報償方案	21
제 1 절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所有權 問題	21
1.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國有化 原則 適用	21
2. 土地 國有化에 따른 特別立法과 統一憲法의 制定	22
2.1 特別措置法 制定	22
2.2 統一憲法의 先行	22
제 2 절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所有權에 大阜 報償方案	23
1. 具體的인 報償方案	23
1.1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 土地 所有權 報償原則의 適用方案	23
1.2 具體的인 報償方案	23
1.3 其他 報償方案	24
2. 報償에 따른 財源의 確保 方案	26
2.1 報償委員會 構成	26
2.2 財源確保 方案	27
제 5 장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 計劃	29
제 1 절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및 土地活用 段階別 計劃	29
1. 제 1 段階 - 報償에 의한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完全 國有化	29
2. 제 2 段階 - DMZ全體 保存 및 土地活用計劃에 따른 Master Plan의 豎立	29
2.1 DMZ全體에 관한 Master Plan	30
2.2 民通線 및 軍事保護地域에 관한 Master Plan	32
3. 제 3 段階 - 自然생태계 保存 및 土地活用の 主體 確定과 詳細計劃의 豎立	33
3.1 土地活用을 위한 關係法令 檢討	33

3.1.1	關係 法令의 檢討 必要性	33
3.1.2	檢討 必要法令	33
3.2	DMZ를 包含한 接境地域의 土地 活用 主體의 確定	33
3.3	詳細計劃 豎立시 檢討 事項	34
4.	제 4 段階 -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 計劃事業 着手	36
4.1	保存地區 (DMZ內)의 事業 着手	36
4.2	指定 特區 지구의 事業 着手	36
제 2 절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 計劃의 主體設定에 관한 方案	37
1.	保存 및 土地活用に 관한 特別立法 措置	37
2.	韓國 戰爭 生態界 管理 特別委員會 構成	37
3.	保存 및 土地 活용을 위한 主體設定과 役割 分擔	38
3.1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管理廳(가칭) 發足 및 運營始作	38
3.2	國家 및 公共團體	39
3.3	集團農場(榮農法人)	39
3.4	民資參與者(國內外 企業體)	40
제 6 장 韓國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및 特區地定과		
	效用 極大化 方案	41
제 1 절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指定		
1.	韓國 戰爭生態界 保存 地區 指定	41
1.1	生態界 保存 地區	41
1.2	文化遺蹟地 保存地區	41
1.3	軍事施設 및 其他 保存地區	42
제 2 절 4개 特區 指定 및 效用 極大化 方案		
1.	4개 特區의 地域的 區分	42
2.	4개 特區의 特區別 特徵	42
2.1	제 1 特區 - 安保 特區地域	42
2.2	제 2 特區 - 自然 生態界 特區 地域	43

2.3 제 3 特區 - 觀光 및 慰樂 特區 地域	44
2.4 제 4 特區 - 自然 學習 特區 地域	45
제 3 절 戰爭 生態界 特化事業 活性化를 위한 題言	46
1. 완벽한 프로그램 개발	46
2. 다양한 觀光 商品 開發	46
3. 사물놀이,악극,놀이마당 등 정기공연을 통한 외국인 유치	47
4. 외국인들의 한국 체험관	47
제 7 장 結 論	49
參考論文 및 書籍	52
ABSTRACT	59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목적과 의의

1998년 7월 環境部에서 DMZ¹⁾生態界에 대한 調査를 한바 있다. 주로 安全상의 問題가 적은 DMZ 東部 地域 2곳과 中部,西部,西海岸 地域 각각 1個所를 선정하여 動植物의 現況과 生態的 特異性を 調査하기 위해 國防部와 事前 協議하여 DMZ 1개 지역당 15일간씩 기준으로 조사 기간을 정하여 具體的이고 詳細하게 調査한 것이다.

북미협상, 러시아대통령의 북한 방문 등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및 국내기업의 북한개발참여 남북연결도로, 철도건설 등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南北한간에 和解와 協力を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接境地域 開發要求가 끊임없이 정치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政府와 國會次元에서 接境地域開發에 관한 法令을 마련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生態界 훼손과 文化遺蹟地 破壞 등을 招來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土地政策의 痼疾인 안목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책 부재, 또 정경癒着의 재현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시점이 DMZ 및 접경지역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개념을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現在 地球上에 存在하고 있는 유일한 戰爭 生態界地域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具體的인 代案

1) 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

을 提示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양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게 되면 자칫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 속에서 범했던 토지 정책의 실패가 통일 한국에서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아울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토지 정책 구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제 2 절 調查 研究의 範圍 및 方向

1. 地域的 範圍

본 연구는 DMZ 지역을 중심으로 민통선과 군사보호구역²⁾을 포함하여 남북으로 50km의 접경지역과 생태계 연구 및 개발환경과 관계된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북방한계선 이북 지역도 군사활동 보장성을 고려시 남한측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學術的 範圍

주로 초미의 관심사인 자연 생태계 연구 기록을 중심으로 학술적 차원과 토지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연학습, 군사, 문화유적지로서 관광목적의 효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3. 연구의 方向

기존에 발표된 각종 생태학적 연구논문과 개발방안에 대한 입법 현황 및 최근의 기사등 문헌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의 이익적인 측면이나 생태계 보존의 학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단편적이고 선언적인 제안이 대부분이다.

2)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군사작전 활동보장을 위해 설정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행위 제한 구역(군사시설 보호법, 72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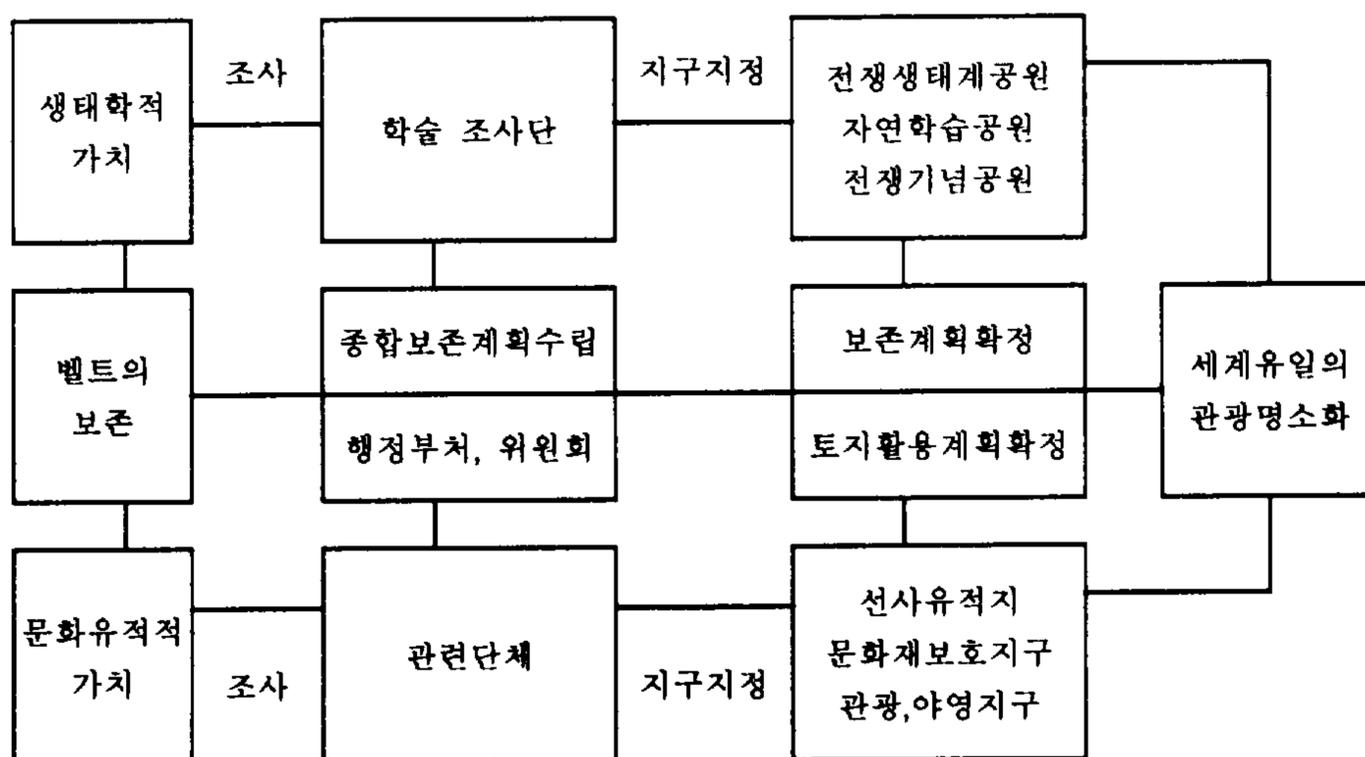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이 지역의 활용가치를 평가하여 전쟁생태계 보존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 종합적인 Master Plan의 수립을 강조하며 이후 환경보존 차원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기 연구된 결과보고서는 우선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제안에 그치고 나아가 보존보다는 개발위주의 활용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생태계 보존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으나 결국 DMZ 토지에 관한 공통적인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世界 唯一無二한 韓國 戰爭 生態界를 保存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그 후 전체적인 Master Plan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후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環境保全開發 次元에서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고 現實的인 接近을 始踏하고자 한다.

< 표.1 > 韓國戰爭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을 위한 節次圖



제 2 장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現況

제 1 절 DMZ 및 접경지역의 일반적 현황

1. DMZ 유래의 지역 특성

1953년 7월 27일 休戰協定을 調印하는 科程에서 軍事分界線을 境界로 雙方간의 軍事的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으로 각각 2km의 觀測 地帶를 설정,이 지역 안에서는 相互 協議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어떠한 군사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休戰協定이후 현재까지 민간의 접촉이 없는 곳이며 南方 限界線 以南의 接敵 地域은 南北간의 軍事的 대치 狀況에 따라 남방 한계선을 연한 일정 범위 안에 많은 군사시설과 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이들의 군사 활동보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民間人의 出入과 私有財産權 행사를 制限,統制하고 있다.

2. 지리적 현황

2.1 DMZ

1) 길이: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육상으로 총 249.4km(서해 도시지역의 해역부분

200km포함시 449.4km)

2) 면적 : 약 520km²

3) 행정구역 : 3도,2시,19군

<표.2>

구분	강원도	경기도(인천,개성시)	황해도
군(북한지역)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 (금강,창도,김화,평강)	연천,파주,김포,강화 (장풍,판문,개성)	(백천,연안,청단)
기존부락	고성군 : 초구, 송도진, 내면, 외면, 대동, 덕산, 고이성, 사천, 신탄 인제군 : 장승, 서희 양구군 : 사태, 석사 두포, 문동, 내리, 암리 김화군 : 수동, 세현, 등대, 죽대, 노동, 방통, 감봉, 광삼, 암정, 금곡, 백덕, 두촌, 울목 철원군 : 강산, 흥원, 유정, 산명, 가단, 유밀, 덕산, 갈현, 사현	연천군 : 도연, 여적산, 지곡, 적음, 나부, 오탄, 풍사, 고잔상, 고잔하, 작동, 청정, 석주원, 모은 파주군 : 분지, 도평, 서장, 동장, 정동리 기타 : 김포, 강화하구	미 확 인

박영철, "휴전선 인접지역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년 '98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료 재수정.

3. 南方 限界線 以南 接敵 地域

3.1 범위: 남방한계선 남측 25km 이내

3.2 지역별 제한 사항

<표.3>

구분	범위	금지/제한,허가 사항
민통선	남방한계선 이남 15km이내	민간인 출입통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 보호 구역 - 군사분계선 남방 10km선과 민통선 이북사이 - 민통선 이남 군 시설 최외곽 500미터 * 면적: 약 1600km ²	- 비인가 민간인 출입금지 - 주택등 구조물 신,증축금지
	제한 보호 구역 - 민통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남방 25km선 사이 - 군사시설 최외곽 1km이내 *면적: 약 3500km ²	- 주택 등 구조물 신,증축 제한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 시행령, 국방부, '72년 제정

3.3 북방한계선 이북은 군사적 운용 특성을 고려시 남측과 유사한 범위내에서 민간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DMZ 부근의 민간인 행위제한 가능 구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약 50km 가 될 것이다.

3. 現 實 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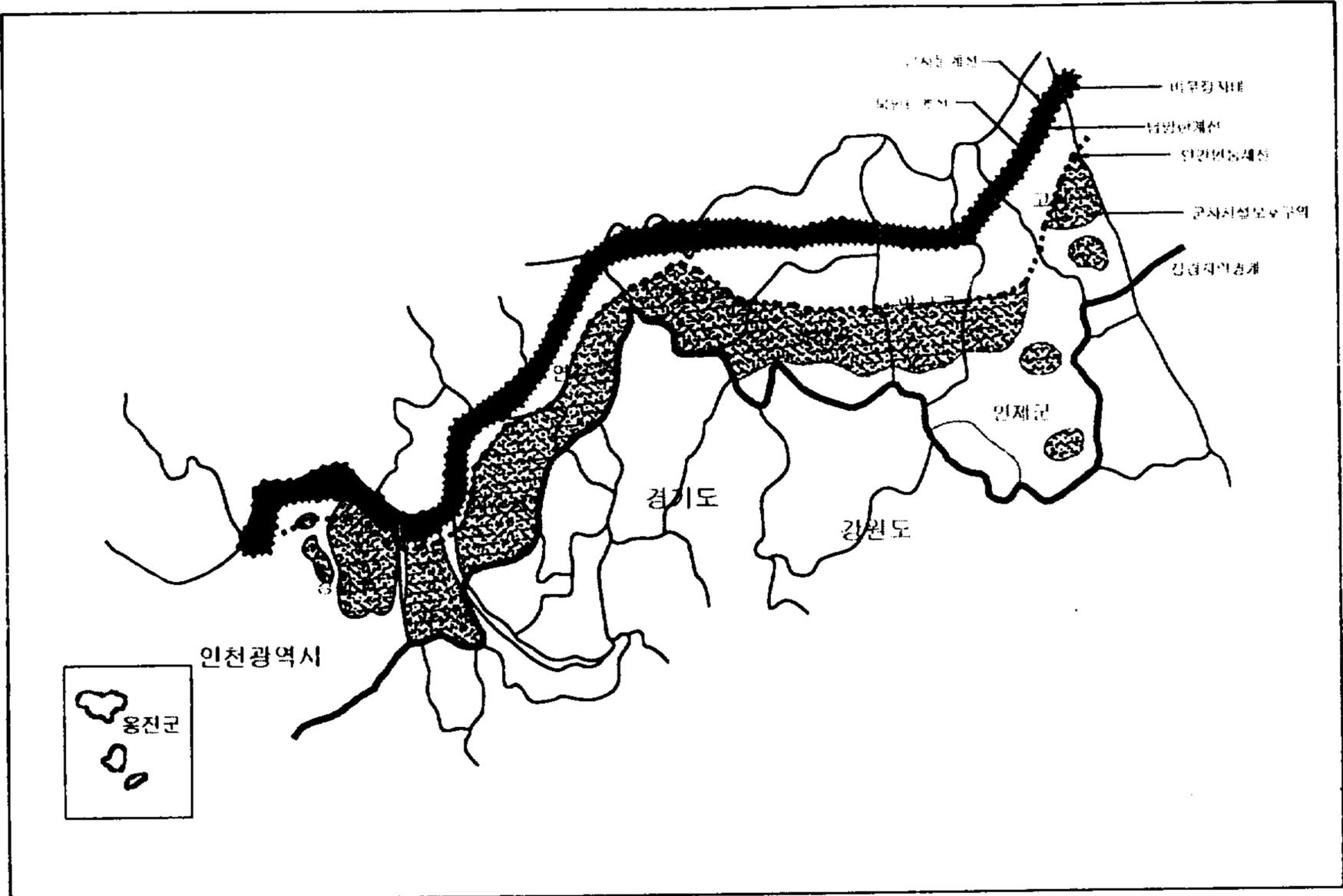
3.1 DMZ

3.1.1 대부분 격전지로 분단 후 45년간 인간의 출입이 없이 전쟁 기간 중 폐허가 된 상태이며 주택지,도로,논,밭두렁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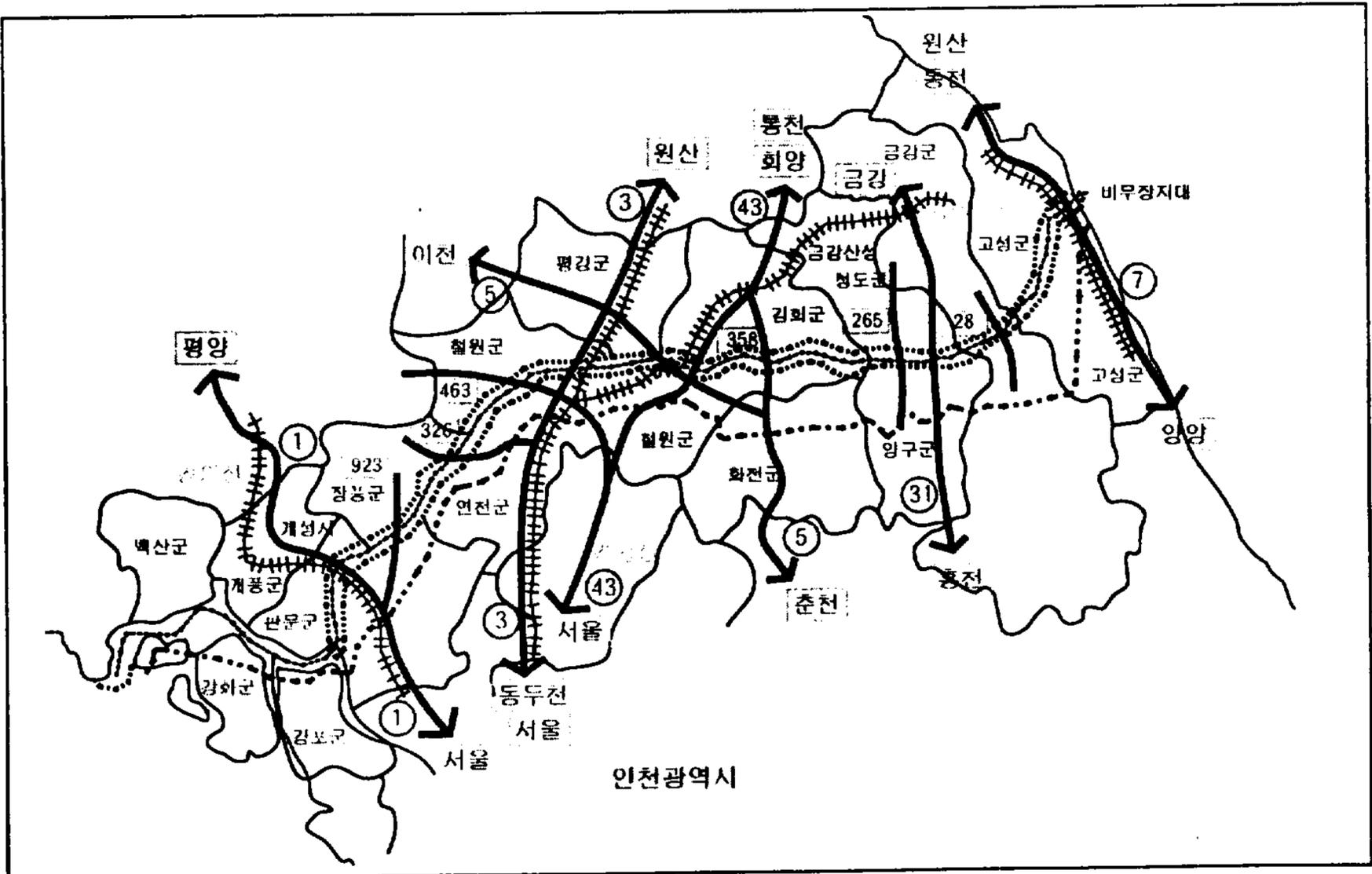
3.1.2 남북 쌍방산의 군사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감시초소(GP)외에 휴전 협정을 위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이 비무장지대 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장소이고 문산에서 개성에 이르는 1번 국도만이 관통하여 남북을 연결시키는 도로로 있다.

3.1.3 휴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은 부분적으로 흔적만 남아있고 한국전쟁 중 매설된 미확인 지뢰지대가 곳곳에 산재하며 군사적 필요에 따라 2,3 중의 경계 철책과 관측과 감시를 위해 일정한 폭으로 수목 제거 지역이 성되어 있다.

<근거 :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김영봉. 1997.12>



[그림 1] 접경지역의 공간적인 범위



[그림 2] 접경지역 교통망 현황도

3.2 南方 限界線 以南 接敵 地域

3.2.1 민통선 내에는 대북 도발 방지를 위한 각종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 지뢰지대, 거점진지등)과 주요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쟁 수행공간 확보와 보안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단지 민통선 내에 영농허가 지역에만 경작을 위한 민간인 출입이 가능하며 고성군 명파리, 양구군 해안면, 파주군 대성동³⁾ 등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경작 및 생활 터전으로 보장된 곳도 있으며 외부인은 철저한 신분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

3.2.2 최근 들어 통일 붐 조성과 지역 개발 욕구에 정부와 국회에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법령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 2 절 DMZ 및 接境地域의 生態界 特秀現況

1. 植物生態界의 現況

DMZ를 연하여 동쪽은 1000미터 이상의 고지군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쪽으로 갈수록 구릉지와 저습지가 발달되어 있고 DMZ 지역내 산림 생태계는 남북 쌍방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산불을 내어 수목의 성장을 제지, 생태적 천이 현상을 방해한 결과 2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닌 수목지역은 거의 없으며 쯤레, 딸기나무류, 신나무, 관목형 콩과식물 등이 작은 덩불을 이루어 야생동물들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DMZ와 인접지역의 토지 이용율은 산림 75.5%, 초지 20.3%, 농경지 2.8%, 습지 1.1%, 기타 0.3%(이 비율은 남북이 비슷)정도이며 아래 표-4

3) 민통선 내의 영농부락은 대북 심리전 효과를 얻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는 서부 DMZ 및 인접지역의 녹지 자연의 등급을 나타낸 것으로 6-10 등급으로 구분된 지역은 산림 지역이며, 7등급은 유령림, 8등급은 장령림, 9등급 이상은 안정 상태의 식물 생태계 지역으로 보편된다. 따라서 전체 지역에 비해 산림 면적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이 20년 미만의 수령을 가진 산림임을 볼 때 전쟁기간 및 남북 대치 상태하에서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이제 막 복원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입장이다.

<표.4> 연천군, 파주군 및 강화군의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녹지 자연도 등급비율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0등급
연천군		16.7		4.2	12.5		66.7				
파주군	2.8	36.1				11.	36.1	13.9			
강화군	0.6	64.2				5.5	12.1				17.6
(교동면)		(65.1)				(1.6)	(4.8)				(28.5)
경기도	4.5	42.1	0.4	0.2	1.1	21.4	16.8	11.9	0.1	0	15

구분	등급 0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지역	수역 지역	시가지	농경지	과수원 및 묘포장	잔디밭 등 인공초원지	갈대와 조릿대 생육지	인공 조림지	20년생 미만의 자연림	20-50년 이상 자연림	50년 생 이상 자연림	고산지대의 자연 초원지대

환경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자연 생태계 조사 보고서 환경부 '92년.

< 표.5 >은 DMZ 및 인접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군락으로 식물이 지형 및 기후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존해 가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천연의 연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 표.5 > DMZ 및 인접 지역의 희귀 자생식물 군락

지역		지리적 특성	자생식물
DMZ지역		기존부락의 폐허로 집 근처에서 자라던 식물의 변종	난쟁이 해바라기, 탈색복숭아, 개털 복숭아
양구군	해안면	1000미터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분지 (400-700미터 고원지대) 주민 거주지역	솜다리 ※감자,고랭지 채소(무,배추) 양구면화,금강태(콩)
	대우산	해발1200미터 고산지대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의 격전지	민들레 - 귀화종 돼지풀 - 만주산과 북미산의 세력다툼 두드러기 쭉
	대암산	해발 1300미터대의 고산지대로 용늪이라는 습지가 형성	들이끼, 끈끈이주걱, 산사초, 산오이풀, 처너치마, 감자개발 나물, 북통발, 숫잔대, 제비동자꽃
인제군	향로봉	해발 1200미터의 고산지대로 해양성기후와 내륙성기후의 영향으로 해무가 심한 지형	금강초롱
철원군	내포리 샘통	추가령 지구대의용암 지대로 겨울 기간중에도 수온이 15도로 유지되는 온천성 늪	겨울미나리,말풀

합광복, "DMZ의 오늘과 내일", 한림대학교 국제 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96

2. 動物生態界의 現況

식물 생태계의 발달은 곧 동물의 서식 가능 공간 확대를 의미하며 식물 생태계 특성은 서식하는 동물군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 강원도 서부 및 경기도 일대의 저습지대는 갈대, 억새풀 등 토지 지역으로 조류를 포함한 양서류, 파충류와 쥐, 고슴도치, 두더지, 멧토끼 등 비교적 작은 동물의 서식에 적합하며 광범위한 산림이 형성되어 있다.

- 경기도 동부 및 강원도 고산지대로 갈수록 멧돼지, 산양, 곰 등 비교적 덩치가 큰 포유류가 서식하기 유리하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채 45년 동안 남북방한계선을 연하여 설치된 철책은 포유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자연 생태계 특성과는 다른 DMZ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동물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쥐과에 속하는 작은 포유류와 양서류, 파충류나 조류와 같이 DMZ 철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동물군은 DMZ 및 인접지역의 남북으로 광범위하게 서식이 가능한 반면 곰, 멧돼지, 산양 등 철책을 통과할 수 없는 큰 동물군은 DMZ이북과 DMZ 이남지역으로 서식지가 분리될 뿐 만 아니라 DMZ 내에서는 폭 4km 길이 240여km에 달하는 통로형 영역권이 형성되어 활동 환경이 제한된 서식처를 제공받고 있다.

우거진 산림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영역을 필요로 하는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류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것은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⁴⁾

< 표.6 >는 DMZ 및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동물권으로 동물 생태계가 지형과 기후, 식물생태계와 동물간의 먹이 사슬에 의한 서식분포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예측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지구를 설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동물생태계 보존 지구는 다음과 같다.

4) 함광복의 "DMZ의 오늘과 내일" p24~30 참조

< 표.6 > DMZ 및 접경지역의 동물 서식분포

특구	지역	지리적 형태	서식동물
DMZ	DMZ지역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자생적 생태계 회복지 역	고슴도치, 두더지, 너구리, 담비, 다람쥐, 족제비, 오소리, 삿갓이,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140종
1특구	임진강/한강하구 (강화도,김포,황 해도)	서해의 조류 현상에 의한 갯벌형성 갈대,억새풀 군락 조성	갯빛개구리매, 원앙이, 황조롱이, 두루미, 개리, 저어새, 고니, 검독수리등 40여종
2특구	철원평야	1000미터 고지군으로 연결된 태백산맥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남강	산양, 사향노루, 수달, 곰, 하늘다람쥐, 멧돼지, 늦반딧불이, 사슴벌레, 열목어, 금강모치, 산천어연어, 은어, 송어, 황어
3특구	양구(두타연)	내륙성 고산지대	열목어, 쉬리등냉수어종 서식
4특구	고성/인제 (향로봉 산맥)	중부내륙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 추가령 지구대의 용암지대로 고온다습한 온천성 늪 이 광범위하게 분포	재두루미, 흑두루미, 두루미, 호사비오리의 30여종, 10여만마리 철새도래지

장승호, "한국의 안보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DMZ(화천,양구,인제)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94

2.1 哺乳類 保存地區

1991년의 조사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25종 강원도 지역에서 30종의
포유류가 확인되었다. 특히 연천과 파주 지역에는 멧돼지, 노루, 고라니
가 김포에는 오소리, 고라니가 다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수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2 淡水魚流 保存地區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의 4개 수계에서 35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이중 1차 담수어 29종,주연성 담수어 6종으로 1차 담수어가 우세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16종이 한반도 고유종임을 확인하고 희귀종인 산천어,열목어,버들가지,금강모치,가는 돌고기,새미,어름치,미유기등 8종을 희귀어로 지목하였다.⁵⁾

경기도 지역 수계에서는 버들매치,물개,꾸구리 등 9종을 희귀어로 지목하였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산천어,버들가지,금강모치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양구군 두타연의 경우 최대 열목어 서식지로 알려지고 있다. ⁶⁾

2.3 兩棲類 · 爬蟲類 保存地區

양서 · 파충류는 4개 장소에서 조사되었는데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8종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양서류 우점종은 참개구리이며 청개구리,아무르 산 개구리,옴개구리가 우세종이었다. 또한 파충류 우점종은 유혈목이고 누룩뱀,쇠살모사,무자치,살모사,능구렁이가 우세종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뱀그물을 이 곳에 치고 뱀 남획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요구된다.

5) 1992년 환경부 조사

6) 1995년 환경부 조사

2.4 野生鳥類 保存地區

환경부에서 91년 6월 26일부터 91년 10월 3일 까지 연천군, 강화도 북쪽 해안, 교동도 중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지역에서 야생조류를 조사한 결과 연천군에서는 36종 527개체, 강화군에서는 37종 670개체, 교동도에서는 35종 415개체가 발견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잣빛개구리매, 원앙이, 황조롱이, 검은물떼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김포군 유도와 교동도 일대는 야생조류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2.5 昆蟲類

1992년 환경부의 민통선 지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조사시기 1991년)에서는 강원도 지역 10목 98과 447종과 경기도 지역(백령도지역 누락)7목 29종 54종이 보고되었다.

'92.5-'93.5의 조사(성천문화재단.1996)에서는 용진군 백령도, 강화도를 포함한 연천군, 파주시, 고성군, 양구군의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전역(6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98종과 778종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대암산 용늪 주변과 강화군 석모도를 보존가치가 있는 곳으로 추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된 늦반디불, 사슴벌레를,또 건봉산 회귀종인 고려집게벌레를 채집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뚜기목의 보호육성을 비무장지대의 풍부한 초지생태계 보존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 3 절 DMZ 및 接境地域내의 文化遺蹟地 및 軍事地域 現況

1. 文化遺蹟地

한국전쟁은 무수히 많은 우리의 유형 문화 유산을 훼손, 파괴했다. 그러나 아직도 DMZ 부근에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사적 가치가 큰 문화 유산이 산재해 있거나 그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 볼수 있다. 한탄강 유역, 북한강 상류, 동해안(고성)에서 선사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서부전선 DMZ 및 북방한계선 부근의 고구려 산성, 철원 평강지역의 태봉국 왕성터가⁷⁾ 전쟁으로 일부 훼손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장단반도 일대에는 고려 왕릉을 포함한 많은 유명인물들의 묘소와 역사적 자취가 남아 있고 철원의 도피안사, 고성의 건봉사, 강화도 전등사 등 신라시대 사찰이 위치한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파주군 적성면 감악산 정상에 위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파주, 연천, 철원 일대에 청군과 왜군과의 전적지 및 성터가 남아 있고 강화도와 김포 지역에는 외부 침략에 대비한 해안 포대를 설치한 흔적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보존지구설정이 필요하다.

2. 軍事地域 現況

한국전쟁 3년 동안 한반도 전역에 걸쳐 격전을 치렀지만 휴전 협정을 맺는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휴전선 부근에 가장 많은 격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 피의 능선, 철의 삼각지대는 한국전쟁의 대명사

7) 태봉국의 멸망당시 수도였던 곳.

로 불릴 정도이고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를 창조한 도솔산 전투, 아군 1 개 군단이 궤멸한 현리⁸⁾ 지구 전투등 수많은 격전지가 있다.

또한 김일성 고지,모택동 고지로 명명된 한국전쟁의 산물,전후에도 도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가 발견된 제 1 땅굴에서 제 4 땅굴이 있다.

또한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남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한 판문점과 남북 이산의 애환이 담긴 임진각,자유의 다리,애기봉등이 전후의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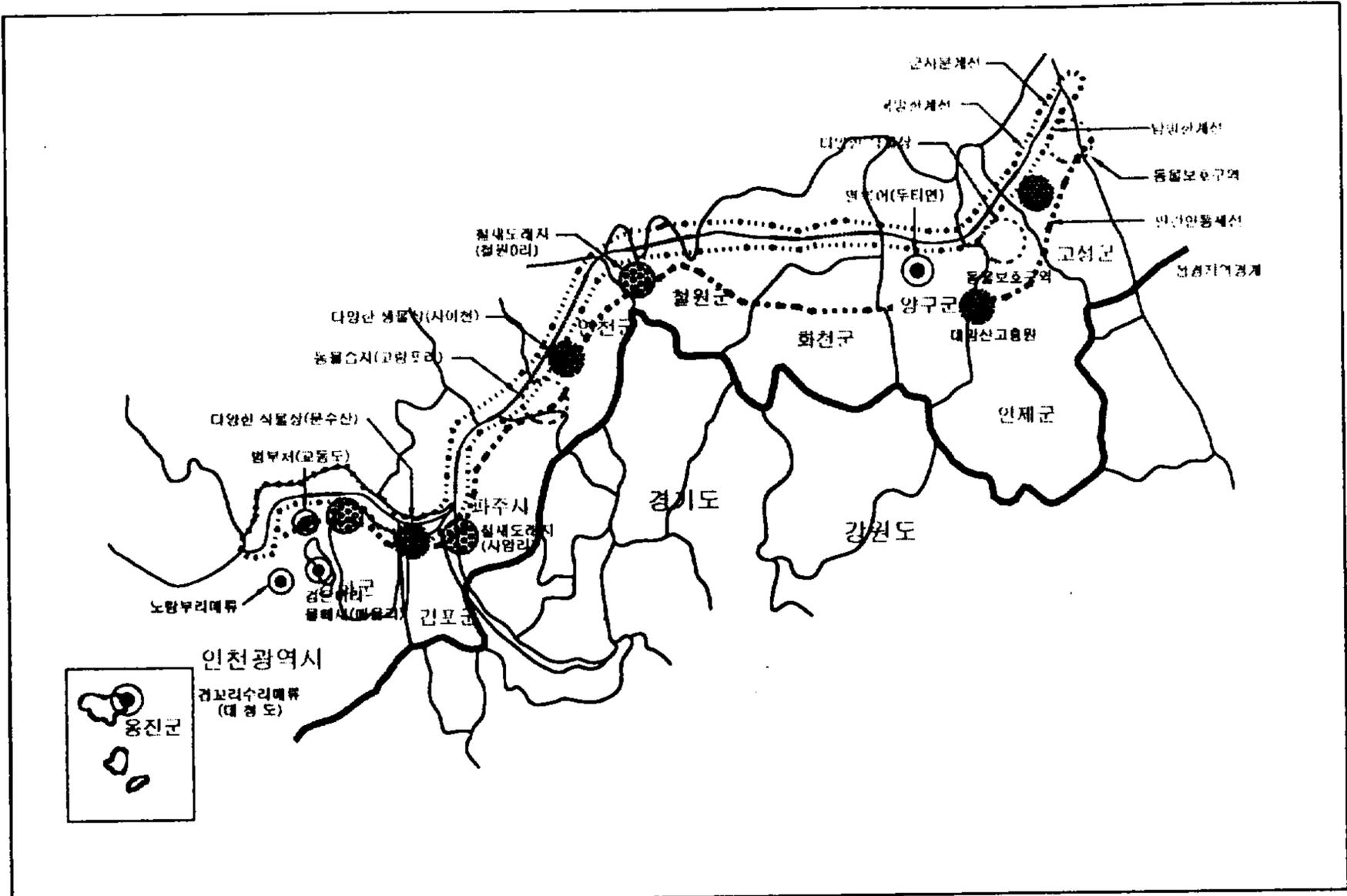
< 표.7 >는 DMZ 및 접경지역의 문화/군사 유적지 현황으로 이 지역의 문화적 보존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표.7 > DMZ 및 접경지역의 문화/군사유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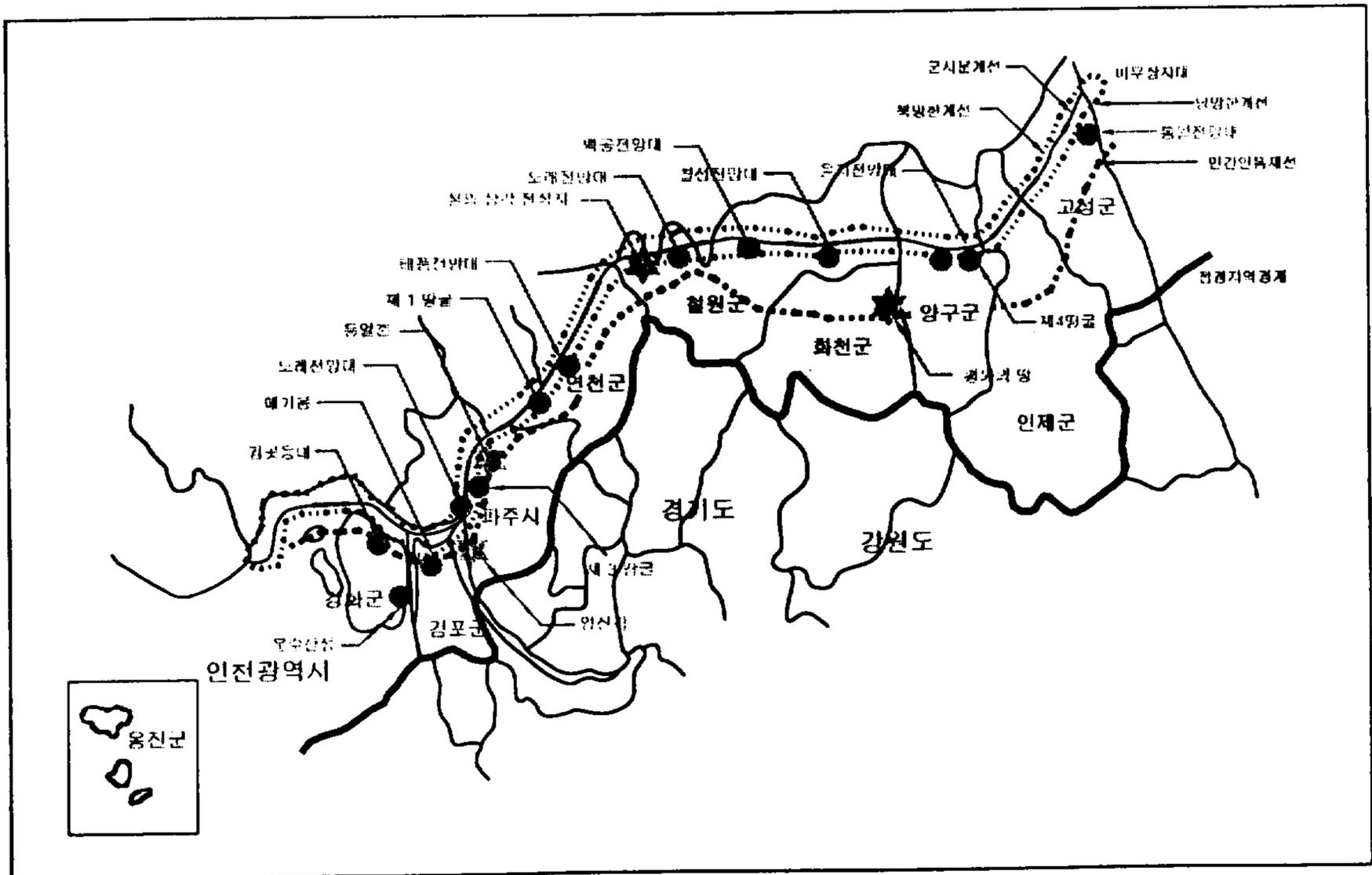
지역	문화유적지	한국전쟁 격전지	전쟁 상징물	
서부	강화	전동사, 보문사, 고려궁터, 갑곶돈대, 철곶갑돈대,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김포	문수산성, 덕포진, 손들목묘, 장릉	애기봉	
	파주	공/순/영릉, 화선정, 반구정, 자운서원		제3땅굴,도라전망대 판문점,임진각,통일공원
	연천	경순왕릉, 박진장군묘, 정발장군묘, 송의전		제1땅굴
중부	철원	도피안사, 태봉국 왕성터 (궁예 도움지), 고석정 김용하 장군묘	백마고지,저격능선,아이스크림고지,철의삼각지대,구철원읍 흔적	제2땅굴,통일전망대 망향의 동산
동부	화천			평화의 댐
	양구	구석기 유적지	643고지,사창리	제 4 땅굴,울지전망대
	인제	김부리(마의태자 도움지)	향로봉,현리지구,매봉/한석한 지구	백골병단 전적비
	고성	건봉사, 화암사, 청간정, 천학정	351고지	금강산전망대 통일전망대

8) 경기도와 강원도에 동일한 지명을 가진 곳이 있으며, 각각 한국 전쟁당시 치열한 격전지로 위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함

<근거 :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김영봉. 1997.12>



[그림 3] 접경지역의 생태계 분포도



[그림 4] 접경지역 안보관광자원 현황도

제 3 장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問題點 및 向後 解決課題

제 1 절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問題點

1. 保存과 開發의 딜레마

현재 접경지역은 취락지역, 군사지역, 농업지역, 자연생태계 지역, 관광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보존과 개발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지역이며 토지 소유권 문제까지 얽혀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할 곳이다.

군사지역 및 자연생태계 지역은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곳이 많은 반면 이미 취락지역, 농업지역, 관광지 지역으로 구분된 곳은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대 산맥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상반된 각계의 움직임

2.1 接境地域 自然生態界 保存 - 世界化 推進委員會

정부와 정치권이 휴전선 일대 개발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세계화 추진위 원회는 이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접경지역 보존 관리 기본구상」을 보면 DMZ 및 민통선내 자연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

해서는 통일 전에 자연환경보호 위주로 관리하고 통일 후에도 환경보존을 위해 희귀동물서식처는 「절대 자연보존지역」 지정을 추진토록 했다.

나아가 남북교류지원,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2 정치권의 움직임

접경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정부방침과는 정반대이다.

10개 시군에 걸치는 접경지역은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이라는 명분 하에 「접경지역 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지역의 축소 및 개발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 자칫 생태계 및 문화유적지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 내용은 경제 및 생활기반, 편의시설등이 현저히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거점을 확보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2.3 언론계의 입장

각 언론계의 입장은 정부와 여당의 중간입장이다. 무조건 보존이라는 명분하에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권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되어서도 안된다. 반대로 개발이 너무 강해 자칫 모처럼 보존된 이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문화유적지 역시 훼손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불명확한 지구지정

이처럼 이 지역에 대한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있는 가운데 보존과 개발이라는 확실한 지역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분별하게 침식당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이 조속히 확정되고 보존과 개발이 지역에 따라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제 2 절 向後 解決課題

1.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確實한 地區 指定

1.1 軍事地域 및 自然 生態界 地域

이 지역은 지난 40여년간 군사 대치와 민간인의 출입통제로 원시성이 유지되어 약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이

뛰어나고 146종의 희귀 동식물도 서식하고 있어 이미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군사시설 및 활동에 따라 생태계의 많은 부문이 훼손되어 있고 특히 비무장지대의 경우 시계확보의 이유로 훼손이 심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초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지역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토록 하고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확실하게 보존해야 한다.

현행처럼 군사보호 지역 내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하며 자연생태계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은 각별히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확한 지구지정이 되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지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정 초 지역주민 외 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정 후 엄격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1.2 聚落地域, 農業地域, 觀光地地域

이 3개 지역은 확실하게 지구 지정이 되어야 하며 지정된 구역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낙후성을 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국회의원의 민원 및 입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 지역내 土地 所有權 分爭 및 報償 問題

통일이 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토지 소유권 분쟁 및 보상 문제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전 국민의 의견 수렴절차 필요

3.1 國民 公聽會

지금부터라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국민사유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궁극적인 목표인 보존 차원의 국익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2 뚜렷한 법적 뒷받침

입법도 안된 상태에서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되며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⁹⁾

9) 남북간의 합의, 사유재산권 보호, 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 4 장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所有權 問題 및 報償方案

제 1 절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所有權 問題

1.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 國有化 原則 適用

우선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 국유화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소유권 선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일부 북한 지역의 경우 민통선내의 집단농장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유는 국가가 하더라도 사용만 기존 경작자가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단 이전의 사유지의 경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땅중 월남민들의 소유의 땅,그리고 군사보호지역에 묶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던 땅, 그리고 분단 전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산,밭,논등 사유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사유지는 소유권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위 문제와 소유주가 밝혀진 후 현재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갈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볼때 토지 국유화 원칙적용을 해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2. 土地 國有化에 따른 特別立法과 統一憲法의 制定

2.1 特別措置法 制定

우선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토지 국유화 원칙 적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대비하여 이 법의 초안을 미리 제정해 놓고 통일이 될 임시에 가서 남북 관련기관(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해야 통일 후의 입법에 대한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統一憲法의 先行

특별조치법의 상위법으로서 통일헌법은 남북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백한 언급을 해 줌으로써 하위법인 특별조치법실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사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 소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접경지역의 사유재산권 불인정이라는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본주의 국가이념에 반하여 그에 따른 저항이 예상되나 한국전쟁의 생태계 보존이라는 중요한 대의명분과 통일한국의 국민적 합의라는 국가적 차원의 소명아래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土地所有權에 대한 報償方案

1. 구체적인 報償方案

1.1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 土地 所有權 報償 原則의 適用方案

DMZ 지역, 즉 휴전선의 남북 각각 2km에 해당하는 남북 한계선 및 북방 한계선 사이 폭 4km, 길이 249.4km 지역은 안전상의 문제와 군사작전으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앞서 제시한 특별조치법과 통일헌법에 의해 국유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남북방 한계선에서 15km내에 해당하는 민통선 지역은 DMZ지역 보다 생태계 보전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명백한 사유지의 경우에도 생태계 보존 목적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해주고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와 다소 갈등이 예상되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경우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 역시 민통선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사관광지화 등 특수 목적에 의한 지역을 선정하여 국유화하고 일부 보상을 해주도록 한다.

1.2 具體的인 報償方案

첫째, 他 國公有地를 貸土하는 方案이 있다.

민통선 내의 땅과 군사시설 보호 지역내의 땅중 국유화된 사유지에 대하여서만 전부 또는 일정 비율만큼 타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대토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역내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둘째, 他地域 開發權 兩度制(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실시한다.

서구에서 발달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잃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지역에서 그만큼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도입한다면 재정적 부담도 줄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직접적인 金錢報償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통일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현실성이 결여된 방법이다. 이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행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넷째, 住宅으로 報償하는 方案이 있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주택은 물론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유분이나 공공택지에 건립예정인 주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유휴부동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이에 관련된 보상 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지어 토지 보상가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법과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 주택 제공방법이 있다.

특히 자식이 없는 노부부나 홀 노인의 경우 이 임대주택을 원할 수 있다.

1.3 其他 報償方案

첫째, 토지 소유권 보상자 중 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國家次元에서 就業을 斡旋한다.

이는 능력과 자격을 감안하여 해당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國有財産에 대한 각종 使用權을 附與하는 制度를 마련한다.

농경지 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농업권, 조림지에 대한 임업권, 바다, 하천 및 호수에 대한 어업권, 국가 소유의 광산에 대한 광산업권, 국가 소유의 상업시설에 대한 상업권 등 각종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보상 방안은 국민의 생계도 보장되고 직접적인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셋째,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내 보상 해당자의 子女 學費를 免除해 준다.

구역 내의 국공립학교에 진학하는 자녀의 학비 면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적 우수 자녀의 경우 타지역에 대해서도 국비 장학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토지를 무료로 헌납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國家 有功자로의 對偶, 小公園 및 案内文과 紀念植樹에 名譽 獻納者로 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통일 부문 국가 유공자로의 대우로서 훈장 수여를 하며 소공원이나 야영지, 숙박지 등에 기증자의 명칭을 부여한다. 또한 공원 입구 등 요소요소에 땅 기증자를 기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념식수에 토지 기증자의 이름을 딴 명패를 다는 방법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토지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서 후세에까지 남길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국가와 7천만 국민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헌납한 경우이므로 분명 국가차원에서 유공자 예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2. 報償에 따른 財源의 確保 方案

2.1 報償 委員會 構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보상위원회가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보상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계·학계·언론계·경제계·종교단체·시민 단체 등에서 엄선된 10인 이내의 보상관계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한다.

둘째, 보상위원회의 역할로는 각종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후에 일어날 분쟁에 대비하도록 하는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엄정하고 공정하게 건별로 심사하여 형평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개인별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적용심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공유지와 현금 성격의 보상재원을 관리하는 보상 재원 관리 업무도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 보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보상위원회는 정치권의 압력등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대통령등 국가 행정수반의 직속기구로 존속하여 엄정 중립을 견지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하여 사전에 정실이 절대 개입하

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DMZ 보존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의 핵심이므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2.2 財源確保 方案

첫째, 국고, 지방재정(출연금,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으로부터 충당한다.

국고나 지방재정의 일부를 보상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보상 위에 관리를 위탁한다.

둘째, 국·공채의 발행을 한다.

보상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등이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셋째, 외국 차관 및 외국 민자 유치를 시도한다.

먼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을 도입하여 장기 외채로 존속토록 하고 상환은 보존 및 토지 활용계획이 완료된 이후 들어올 관광수입으로 이를 갚아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민자 제공자를 엄정히 선별하여 이 지역 내에 카지노 등 사업권을 부여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투자된 금액을 회수해 가도록 조치한다.

넷째, 국내 기업체 민자 참여 및 제 3 섹터사업 참여 유도한다.

각종 관광 및 위락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적극 유도하여 운영에 의한 각종 이익금을 일부 환수토록 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 성금 모금운동을 추진한다.

언론사, 국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일 관련단체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일 성금 모금운동을 추진한다. 각종 수해의연금, 불우 이웃 돕기 등으로 일반인들의 부담이 현재에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통일을 위한 성금 모금이라면 우리 민족의 정서상 많은 자금이 모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내국인은 물론 해외동포들 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한국 국민의 통일 염원을 집약할 수 있는 기금마련에 동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소비세 등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시킨다.

다소 조세 저항이 예상되지만 통일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 그리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예상된다.

일곱째, 기타 재정확보의 차원에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및 수도권 과밀 부담금 총액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후 남북 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공유재산 출자 이익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生態계 保存 및 土地 活用 計劃

제 1 절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및 土地活用 段階別 計劃

1. 제 1 단계 - 보상에 의한 DMZ를 포함한 接境地域의 完全 國有化

한국 전쟁 생태계 보존 지역에 대한 완전 국유화는 필수적이다. 누구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은 예외 없는 완전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전체 사업에 있어서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국유화에 따르는 보상방안은 앞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이 지역에 대한 완전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국유화는 무조건적 대전제 조건이다.

2. 제 2 단계 - DMZ전체 保存 및 土地活用計劃에 따른 Master Plan의 수립

DMZ전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보존 지구를 설치한 후 그 다음으로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2.1 DMZ전체에 관한 Master Plan

첫째, DMZ 지역은 無條件的인 保存原則을 適用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철책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언뜻 보기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을 보호하고 또 이 지역내의 동식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안전 조치일 수 있다.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철책선은 전쟁의 상흔과 아울러 우리의 지나간 역사의 아픔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민족의 비극을 다시는 재현시키지 말자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존치시키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도로, 철도는 고가다리로 설치하도록 한다.

남북 철책선 유지를 전제로 도로 및 철도의 설치에 반드시 고가도로로 통과하도록 하여 동식물의 이동 및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이것은 한국전쟁 생태계라는 특이한 자연지역을 원형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다. 만약 넓은 도로가 생기고 철로가 생기면 이 도로와 철로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철책선에도 일부 행동반경이 큰 북부 동물 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남북간에 자연스러운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生態界 保存 地域에는 나무 구름다리(Wooden Bridge)를 설치하여 보존한다.

생태계에 대한 자연관찰을 위해서는 나무로 만든 다리를 설치하여 다리 위에서만 동식물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목적이 포함된다.

넷째, 우든 브리지 위 관찰탑 및 망루를 설치하여 관광 및 자연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철책선 부근에는 군사시설이 아닌 관리청(가칭)소속의 감시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보호토록 한다.

다섯째, 일부 요충지에 군 병력 배치 유지하도록 한다.

통일이 되더라도 군 병력의 일시적인 감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군사 요충지에 군인 병력에 의한 감시초소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4km 정도의 고가 도로, 고가 철도, 나무 구름다리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249.4km의 남북 철책선 위로 지나가는 고가 교통수단은 관광교통수단으로서 외국 관광객 유치 사업 중 홍보물로서도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도로 위에 일정면적의 전망대 및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다른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뢰밭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민간인 통제 구역을 신설한다.¹⁰⁾

DMZ지역은 원천적으로 관광객 및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수백만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민통선 이북 국도 1, 3호선 확장시 수백발의 지뢰를 제거한 바 있다.

다만 학술 조사 목적의 전문요원 출입은 일부 허용하되 안전요원이나 군인 등을 대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서해안 및 동해안 고속도로는 그대로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목포-군산-인천-서울-개성-해주-진남포-평양-신의주로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구태여 철책선을 넘는 고가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면 된다.

그리고 부산-울산-포항-강릉-원산-청진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 역시 철책선 위를 통과시키지 말고 확장 및 포장공사만 실시한다.

2.2 民通線 및 軍事保護地域에 관한 Master Plan

이 지역은 4대 특구 지역으로 지정, 특화를 통하여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하게 교통편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11)

2.2.1 4대 개발 특구별 마스터 플랜

구 분	제 1 특구	제 2 특구	제 3 특구	제 4 특구
특 성	안보특구	생태계 특구	관광위락 특구	자연학습특구
지 역	문산 일대	철원일대	양구일대	고성일대
권 역	서부전선 권역	중부전선권역	중동부전선권역	동부전선권역
면 적	700km ²	600km ²	650km ²	550km ²

11)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과 보존의 양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역별 방안을 제시했다.

2.2.2 4 대 특구별 특징

安保特區, 生態界 特區, 觀光慰樂 特區, 自然學習 特區 등 권역별 특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국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제 3 단계 - 自然生態界 保存 및 土地活用の 主體 確定과 詳細計劃의 豎立

3.1 土地活을 위한 關係 法令 檢討

3.1.1 關係 法令의 檢討 必要性

접경지대의 토지활용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획단계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 놓아야만 사업 시행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¹²⁾

3.1.2 검토 필요 법령 * <표.8> 참조

3.2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토지활용 주체의 확정

우선 국가적인 차원의 주체는 국가의 특별출자에 의한 특별 법인(예: 가칭 접경지역 토지개발공사)을 설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및 민간의 역할분담을 시도해야 한다. 즉, 시, 도,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12) 우리나라는 국토개발 촉진과 산림보호, 식량난 해소 등 각 부처간의 중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너무 다양해 개발과 억제에 대한 각 부처간의 상반된 법령 제정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관인 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관광공사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방공사에 관한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건설업자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나머지 부문에 관하여는 민관합작사업인 제 3 섹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상세계획 수립시 검토 사항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은 먼저 생태계 보존을 위한 DMZ 및 접경지역의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후 정밀지역 조사를 통해 권역의 구분과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토지 및 기타 자원의 보존 및 이용부문에 도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도로,항만,통신시설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과 함께 토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표.8 : 관계 법령 >

관 계 법	관 련 내 용
산림법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채석허가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신고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업 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지정,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하천법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의 처리에 관한 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폐기물 관리법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수도법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및 전용상 수도 설치인가
전기 사업법	일반전기 사업 또는 발전사업의 허가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계획의 승인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도로법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도로 점용의 허가
사도법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도시계획법	토지 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및 점용 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분묘 개장의 허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 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도시 재개발법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주택건설 촉진법	아파트 개발 및 기본계획의 승인
공유수면 매립법	매립면허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협의 또는 승인
자연공원법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초지법	초지조성 및 전용의 허가,국공유지의 사용 대부 허가
농어촌 발전 특별촉진법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군사시설보호법	행정청의 허가 시행에 관한 협의
수산업법	어업 허가
항만법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토지수용법	사업 인정 및 사업 인정의 고시

4. 제 4 단계 -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 計劃事業 着手

4.1 保存地區(DMZ내)의 事業 着手

개발주체가 확정된 후 각 주체에 의한 업무 분담을 완료하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DMZ내의 보존 사업을 맡은 주체는 주로 도로의 고가다리, 철로의 고가다리, 생태계 보존지구위의 구름다리 및 전망대 등의 시공을 맡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동, 서해안 고속도로 구역을 맡은 건설업자는 기존의 고속도로 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또 일부 생태계 보존지구 내에는 동물을 위한 먹이통을 설치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육성책을 위한 구체적인 공사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 조류들에 대한 인공새집 등의 설치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4.2 지정 특구지구의 사업 착수

각 사업 항목별로 주체가 확정되면 공사 일정별로 사업에 임한다.

단 계	세 부 내 용	공 사 내 용
제 1 단계	부지조성사업	주변공사
제 2 단계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	기간산업 공사
제 3 단계	본건물시설	건물공사
제 4 단계	조경사업	마무리공사

또 공사 종류는 관광특구 내에는 각종 위락 시설공사, 자연학습 특구 내에는 자연학습관공사, 전시관공사,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공사가, 안보 특구에는 안보전시관, 안보 교육관 등의 건립공사들이 있을 수 있다.

각 지역 공히 휴게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오락시설, 판매시설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2 절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및 土地 活用 計劃의 主體設定에 寬限 方案

1. 보존 및 토지활용에 관한 特別立法 措置 (예상되는 법률)

보존 및 토지활용에 관한 특별입법 조치가 있어서 예상되는 법률로는 가장 중요한 自然 生態界 保存을 위한 特別措置法(가칭)과 그에 따른 生態界 保存地區 管理를 위한 管理廳 設置에 관한 臨時措置法(가칭), 그리고 事業部文의 4개 特區 指定을 위한 臨時措置法(가칭) 이외 기타 법률이 있다.

2. 韓國 戰爭 生態界 管理 特別委員會 構成

기 언급한 보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생태계 관리 특별위원회도 보상위원회와 똑같은 조건과 자격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여기에는 주로 동물학자와 식물학자가 포함된 생태계 보존 연구를 위한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보존 차원의 연구가 선행된 후 협의를 거쳐 보존 및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토지활용계획을 담당할 위원의 경우 비교적 선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담당할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다.

업 무	사 업 내 용
종합계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주체선정	토지활용계획의 주체 선정 작업
우선순위	활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배정	토지활용 계획 사업별 예산배정 업무
세부계획	각 특구별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본 방침 수립
관리방안	보존 지역 및 개발지역내의 4개 특구별 세부관리 방안 수립

3. 保存 및 土地 活用을 위한 主體設定과 役割 分擔

관리청 설립이후 위원회는 관리청의 자문기관으로 존속하며 또한 개발사업 이후 관리 및 운영사업은 관리청으로 이관하고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수시로 소집,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한다.

3.1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管理廳(가칭) 發足 및 運營始作

각 특구별로 보존 및 개발시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관리청에 의한 운영사업이 시작된다. 이때는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 공보처, 외교통상부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계 보존지구의 관리의 수시로 생태계 보존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생태계 보존 구역내의 동식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각종 질병이나 외부의 침입, 다른 동식물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되

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외 생태계 보존 연구회등 전문기관에서는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리청의 필요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3.2 국가 및 공공단체

사업 착수 이전단계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되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어느 기관하고도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은 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수립된 계획의 실시 단계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본격적인 공사발주는 조달청이 그리고 운영사업의 자문은 관광진흥공사,문화재관리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3.3 집단농장(영농법인)

관광농원사업의 실시나 운영, 그리고 특용작물전시관 건립과 판매, 운영을 위한 영농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주로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의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을 설립, 특용작물의 공동재배, 판매, 운영사업까지 담당,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이다. 각 개발특구지역안에는 지역특성에 따른 농작물, 수산물 등을 재배, 판매한다.

가능한 한 특구별로 생산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농수산 당국자들은 사전에 계도해줄 필요가 있다.

3.4 민자참여자(국내외 기업체)

각 장에서 조금씩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외 민자 참여자에게는 시설 공사에 민자를 참여시키는 대신 운영권을 일정기간 부여, 투자 금액을 회수하도록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물 모두는 국가 소유(관리청 소유)로 기부 채납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운영이 미숙한 관리청은 전문 민간업체의 운영방법도 익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대규모사업인 호텔업 및 카지노 사업의 경우 외국의 민자 참여자를 유도하며 중소규모의 기타 사업에는 국내 민자 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략적인 국내외 민자 참여자간의 업무 분담을 협의하도록 한다.

제 6 장 韓國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및 特區指定과 效用 極大化 方案

제 1 절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指定

1. 韓國 戰爭 生態界 保存 地區 指定

1.1 生態界 保存 地區

이 지구 지정은 환경부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제 2 장 지역현황에서 언급된 각 지역별 동식물 군락지구에 대하여 생태계 보존연구회등 전문기관의 제청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보존 관리는 관리청이 하되 학술단체들은 일정기관 지정된 지구별로 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관찰하여 생태계 보존에 특히 유념토록 한다.

1.2 文化遺蹟地 保存 地區

이 지구도 문화관광부 소속의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고 복원이 필요한 문화재에 관하여서는 학술조사에 의해 고증된 자료를 통하여 차질 없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軍事施設 및 其他 保存地區

이 지구는 주로 국방부에 의해 주관되며 상당부문의 군사시설은 그대로 존치될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의 필요성은 영원한 것이며 기 설치된 군사시설은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고 군사 관광유적지로 개발하여 존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 2 절 4 개 特區 指定 및 效用 極大化 方案

1. 4개 특구의 地域的 區分

4개 특구에 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설명되었지만 이 항에서는 각 특구별로 기존 자원시설과 신규예상시설을 열거해 봄으로써 특구별 개발특성을 예상해 본다.¹³⁾

* 각 특구별 시설 < 표.9 > 참조

2. 4개 특구의 특구별 특징

2.1 제 1 특구 - 安保特區 地域

제 1 특구는 전투가 치열했던 문산, 개성일대 지역으로서 안보 개발 특구로 지정, 전쟁기념관, 안보전시관을 건립, 안보를 특성으로 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13) 4개 특구는 군사적, 지리적, 역사적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했다.

위치상 서해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투가 잦았던 서부 전선 지역으로서 강화도등 해안과 연계한 안보 관광 특구의 성격을 잘 살려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서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일 코스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유적지인 강화도의 광성보,초지진,덕진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안보관광 특구로의 뜻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극기훈련장인 전쟁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특성화 작업을 추진한다.

2.2 제 2 특구 - 自然 生態界 特區 地域

철원일대 지역의 중부전선권역인 이 특구는 철새도래지등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특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 지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식물 군락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특징을 살려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학습교육장 및 청소년 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족 단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을 개발하여 산책로를 위시한 가족동산을 조성해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 지역에 구름다리를 설치,철책선 내부를 충분히 관찰하도록 유도하며 생태계 관찰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안보교육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곳이다.

< 표.9 : 각 특구별 시설 >

구분	제 1 특구 (안보특구)	제 2 특구 (생태계특구)	제 3 특구 (관광위락특구)	제 4 특구 (자연학습특구)
기 존 자 원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임진각 · 통일 전망대 · 대성동 마을 · 자유로 · 임진각 주변, 철새도래지 · 갑곶돈대 ·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마고지 · 제 1 땅굴 · 노동 당사 · 궁예 성터 · 철새 도래지 · 희귀식물 군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 땅굴 · 도솔산 전적지 · 대암산 용늪 · 해안 운석지역 · 가칠봉, 김일성 고지 · 모택동 고지 · 읍지 전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전망대 · 금강산 전망대 · 화진포 · 해금강 · 금강산 · 송지호 · 김일성 별장 · 잼버리 야영장
신 규 예 상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전시관, 교육관 · 전쟁기념관 · 전망휴게소 · 일용품 판매시설 · 숙박시설-호텔 · 휴게시설 · 해양박물관 · 체육시설 · 음식점 · 편의시설 · 컨벤션 센터 -국제안보회의장 · 관광상품 판매장 · 청소년전쟁 체험관 -극기훈련장 ·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체험관 -주거 및 음식생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관 · 동물관 · 숙박시설-호텔, 콘도, 고급여관,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터 · 가족동산-산책, 식당, 휴게시설, 게임시설 · 관광상품 판매장 · 자연학습 체험관 · 온천 시설 · 청소년 예절교육장 · 민속관 · 한국전통 놀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카지노) 대형 - 1개소 · 중소형 - 2개소 · 콘도미니엄 - 1개소 · 특용작물전시관 및 판매시설 - 1개소 · 전망휴게소 - 1개소 · 일용품판매시설 - 1개소 · 오락시설 - 3개소 ·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오락실 · 영화관 - 1개소 · 휴게시설-3개소, 다방 및 전통찻집 등 · 식당 - 5개소 · 무도회장-디스코텍 등 · 골프장, 골프연습장 · 관광상품 판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카지노) 대형-1개소 · 중소형-2개소 · 콘도미니엄 · 유스호스텔 · 청소년 야영장 · 캠프파이어장 · 카페 · 음식점 · 체육시설-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 안보전시관, 교육관 · 게임센터 · 관광상품 판매시설 · 해돋이전망 휴게소 · 자연학습 체험관

2.3 제 3 특구 - 觀光 및 慰樂特區 地域

이 관광위락특구는 제 4 땅굴, 편치불 격전지, 김일성 고지, 모택동 고지가 있는 곳으로서 수려한 산세와 전쟁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살려 대대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역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대형 관광호텔에는 카지노를 신설하고, 게임룸, 무도회장, 골프장 및 영화관을 보유하도록 한다.

또한 대형 관광상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특용작물 판매와 한국 고유의 의상 및 소품 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수입도 올려야 할 곳이다.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관광유치를 위하여는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제 1, 2 특구와 제 4 특구까지 교통이 원활하게끔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여 기동에 필요한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번 오면 4-5일 정도 이곳에서 묵게 하여 체류하는 동안 전혀 불편 없이 지역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어 구사가 능숙한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편의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획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2.4. 제 4 특구 - 自然 學習 特區 地域

이 지역 역시 제 1 특구와 마찬가지로 해안과 인접해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서 금강산, 해금강, 송지호를 볼 수 있어 동해의 해돋이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서도 제 3 특구와 마찬가지로 대형관광호텔을 건립하여 외국인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4-5일 이상 외국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완벽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내국인들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우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경제여건이 열악한 북한주민들의 지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남한 경제여건 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관광 수입을 늘려 재원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제 3 절 戰爭 生態界 特化事業 活性化를 위한 題言

1. 완벽한 프로그램 개발

4개 특구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코스에서 4코스 까지 활용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표.10 : 코스별 특화 전략 >

구 분	필요한 요구 사항
코스의 특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코스 - 금강산 일대 등산 코스 · 제 2 코스 - 주변일대 관광 코스 · 제 3 코스 - 생태계 등 자연학습을 위한 코스 · 제 4 코스 - 전쟁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코스
정확한 시간관리	· 완벽한 스케줄 관리로 외국 관광객의 신용을 절대적으로 얻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전문관광 안내원	· 자격요건으로 완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안내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깊은 조예, 국제적인 매너와 서비스 정신이 요구되며 한국적인 인품 즉 친절하고 예의 있는 태도가 요구됨.

2.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제작하는 등의 국제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 표.11 : 특화 관광 상품 >

구 분	종 류	내 용
한국전통 의상	도포,갓,치마저고리, 배넛서고리,모시옷	가장 한국적인 전통의상을 사이즈 별로 비치하여 지역마다 적절한 품질과 동일한 가격표를 붙여 판매.
의상에 관련된 소품	장죽,부채,노리개,손칼	우리 선조들이 즐겨 소지하고 있던 상품들의 질을 높이고 규격화하여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여 판매.
기타 소품류	죽부인, 대나무, 베개, 돗자리, 화문석, 밀짚모자, 짚신	체계적인 개발 및 상품화하고 규격을 소형화할 필요.
전통악기	북,쟁과리,징, 대금류등	· 적극적인 관광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전통악기의 관광상품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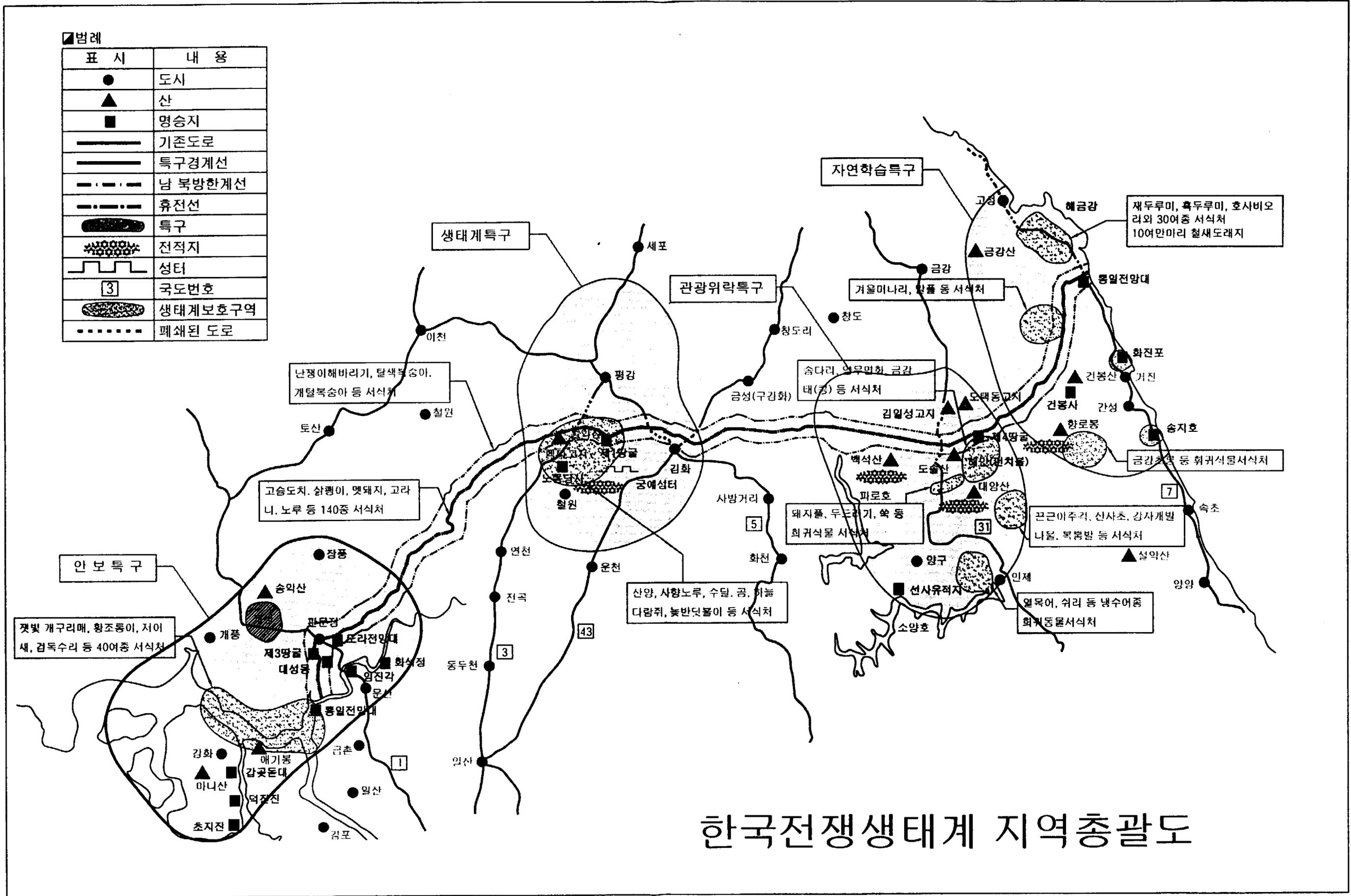
3. 사물놀이,악극,놀이마당 등 정기공연을 통한 외국인 유치
한국적인 전통이 가장 잘 반영된 부문으로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
끌어낼 수 있는 4개 특구 지역에서 정기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4. 외국인들의 한국 체험관

< 표.12 : 사업 내용별 세부전략 >

구 분	세 부 적 인 사 항
숙박시설	한옥에 한국식 잠자리를 마련하여 한식 침구류등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구비.
한식 식사 의상	식사는 모두 한식으로 하고 각종 과일 등도 국내산을 엄선하여 제공. 한국 체험관 내에서는 전통 한국의상을 착용.
일상생활	한국식인사교육과 아울러 담배,차등 국산일용품을 사용하도록 유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음악청취등 모두 한국것으로 하되 텔레비전 의 경우 외국어(영어,일본어)자막처리를 하여 청취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한국전통 특산물 판매	판매시 전제조건 -전제품의 규격화,고품질의 포장(검역통과를 위한 강통 포장등) 철저한 부패방지,완벽한 상품설명서 첨부,정찰가격제 실시

(그림 5)



외국인들의 한국체험관 설립의 목적은 외국방문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한국체험을 유도하여 한국에 대한 보다 높은 친밀감과 애정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

이상과 같이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토지활용부문에 있어서 특구 지정과 특구내 특화사업을 통하여 그 효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과제로서 외국방문객의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유치를 계획하고 관광수입을 도모하는 등 두 가지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結 論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 무드는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기에 민족을 이념적으로 갈라 났던 DMZ는 사라질 것이다. DMZ가 없어지고 군사적 대치관계가 해소되면 DMZ를 중심으로한 접경지역에 대하여 수도권지역 인구 과밀현상 해소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마련 등을 빙자한 개발요구의 과열 현상이 생길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 100 - 120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DMZ는 현재 서식하고 있는 수목의 수령이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제 겨우 유년기에 접어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전쟁생태계 연구 가능 지역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생태계 보존적 측면과 생태계 자원화 측면, 남북통일후 문화적, 이념적, 경제적 괴리에서 오는 사회적 충격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Master Plan을 마련, 사전에 법령화함으로써 통일 후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바로 시행되어야만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DMZ와 접경지역을 범민족적 민족유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민주복지국가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지역을 완전 국유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 보존지역은 생물학적 생태자원화로 자원의 빈국인 우리 나라를 관광 및 생태자원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광 수입은 통일 후 DMZ지역 국유

화에 따른 토지보상비, 북한지역 경제개발 지원금, 생태계 보존 및 개발비용에 대한 풍부한 재원이 될 것이다.

개발 단계에 이르러서는 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DMZ를 포함한 일부 접경지역내 생태계 보존 지역에는 일체의 출입을 불허하고 도로 및 철도 등 기존의 남북 연결 교통수단만을 허용하되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DMZ 통과 구간은 고가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보특구, 생태계특구, 관광위락특구, 자연학습특구 등의 개발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파적이고 왜곡된 정책도 배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국민공동 감시기구의 구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시 DMZ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통일이전에라도 남북의 최고통치자들이 합의의정서를 작성하여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DMZ 생태계 조사를 하게 될 정도로 지금까지의 생태계 연구조사 결과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지역의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논문의 두 번째 한계이다. 즉 군사 접경지역내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군사기밀상 밝힐 수 없는 부문이 많아 정보가 미흡한 실정임을 거듭 밝혀둔다.

그리고 본 논문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DMZ 토지의 국유화 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한국 전쟁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다면 좀더 국민 화합적이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논문 및 서적

1. 김영봉,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12
2. 나용덕, “통일을 대비한 북한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1997.
3. 허원석, “한반도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1995
4. 장홍석, “통일 후 북한토지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1995
5. 노대도,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6. 안명주,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1997
7. 이진석, “국공유지 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8
8. 김도형, “우리나라 국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1997
9. 김우일,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1996
10. 함광복, “DMZ의 내일”, 한림대 국제 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
11. 장승호, “한국의 안보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DMZ(화천,양
구,인제)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4

12. 「접경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법
안 사본, 1997
13. 대한 주택건설 사업협회, 민자유치사업 사례집, 1996
14. 국토개발연구원,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1995
15.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 1998
16.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관계법령집, 1997
17.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민통선북방지역자원조사보고서, 1987
18. 정영호, 비무장지대인접지역의 식물구계조사보고서, 1974
19. 이영로등, 철원 및 문산지역의 식물조사보고서, 1974
20. 공보처, 문화유적총람, 1977
21. 행정자치부, 민통선북방마을 현황, 1986
22. 보병21사단, 지역전사, 1984
23.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1995
24. 양구군, 양구군지, 1992
25. 고성군, 고성군지, 1986
26. 화천군, 화천군지, 1987
27. 철원군, 철원군지, 1992
28. 원종관등, 민통선북방지역의 지질조사보고서, 1987
29.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지 6월호, 1988
30. 이걸등, 민통선북방지역자연지리적 고찰, 1987
31. 환경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자연생태계 보고서, 1992
32. 함광복, DMZ는 국경이 아니다, 1995
33. 함광복, 민간인 통제구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 1991

3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개발사이의 갈등해소방안 제97-05호(통권 제27호), 1997
35. 환경부, 「96년 환경백서」, 1996
3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통선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1997
37. 이상돈,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pp. 187-210, 1995
38. 마창환경운동연합, 주남저수지 교육관 설치 시의회 부결에 따른 마창환경운동연합의 입장과 질의서, 1996
39. 조홍섭, 김경애, 이곳만은 지키자, 1993
40. 심숙경, 환경과 지역경제 조화시키는 생태관광, 1995
41. 한상욱, 생태관광(Eco-Tourism)의 도입방안, 1995
42. 신문자료 모음
 - 42.1 “비무장지대,그 아픔의 역사, 20세기 이념전쟁 역사의 증언적 공간을 자하는 움직임이 뜨겁다, 97.6.24
 - 42.2 “DMZ 생태보전 당연하다”라는 논설”, 97.5.23

<이상 동아일보 기사 모음>
 - 42.3 “북한, DMZ 환경보전 남북협력 제의에 무반응” 1997.06.27
 - 42.4 “남북한 협력 DMZ보존하겠다” 김대통령 유엔환경총회 연설, 1997.06.24
 - 42.5 “[DMZ] 통일후에도 개발못한다”...‘자연 유보지역’ 지정, 1997.05.23
 - 42.6 “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보존세추위,DMZ환경정책 건의”. 1997.05.21
 - 42.7 “[환경보전법 개정안] 통일대비 DMZ 개발 규제”.1997.05.15

42.8 “잊혀진 비무장지대 역사유적 집중조명”.김한수기자.1998.07.26

42.9 “희귀조 저어새 비무장지대 번식”.1998.07.20

42.10 “당정,군사시설보호지역 규제 완화”.1998.07.05

42.11 “[레저] “보훈의 달 맞아 분단현장 DMZ답사 인기”.1998.06.15

42.12 “고구려고분 등 세계문화유산 등록 공동추진 무산”.

1998.04.09

42.13 “[경기도]자연환경지역 147곳 지정”. 1998.01.22

42.14 “[관광정책] 관광산업 행정규제 대폭 완화”. 1998.01.02

42.15 “[사설] ‘자연파괴’하는 의원입법”. 1997.11.07.

42.16 “보전과 개발의 갈등”. 1995.12.09

42.17 “남북한 환경학자 한반도 환경문제 논의”. 1995.10.19

42.18 “비무장지대서 학술회의 개최”. 1996.11.06

42.19 “[민통선지역 개발] 지상 공청회”. 1996.10.14

42.20 “[DMZ개발법]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1996.09.04

42.21 “[관광] 생태관광지 개발 본격화 전망”. 1996.07.19

42.22 “[DMZ]남북공동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추진”. 1996.05.29

42.23 “[환경부]향로봉 등 3곳 생태계보전지역 보전 추진”.

1996.05.28

42.24 “[환경] 철원평야에 ‘자연생태 기념관’ 조성”. 1996.05.20

42.25 “산업체와 ‘환경계약제’ 도입 추진”. 1996.05.07

42.26 “보전과 개발의 갈등”. 1995.12.09

< 이상 조선일보 기사 모음 >

42.27 “[환경] 비무장지대 생태계 천국”. 손규성 기자.1998. 8. 27.

- 42.28 “[환경부] 다음달 하순 DMZ내 생태계 첫 조사” 정상영 기자.
1998. 7. 31.
- 42.29 “[생태] 회귀조 저어새 비무장지대 번식 확인”. 1998. 7. 20.
- 42.30 “[환경] 백령·대청도에 멸종위기 금개구리 집단서식”.
1998. 6. 10.
- 42.31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 강원도지사후보”김종화 기자.
1998. 5. 25.
- 42.32 “북한 자원 노동력 ,남한유휴설비 상계”. 권태호 기자.
1998. 4. 13.
- 42.33 “[세추위]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관리방안 확정” 장정수 기자.
1998. 1. 30.
- 42.34 “[환경] 전국 습지환경조사 실시”. 1998. 1. 28.
- 42.35 “[대선] 한나라당 분야별 주요 공약”. 1997. 12. 3
- 42.36 “[미국] 한반도 DMZ는 생태계의 보고”. 1997. 10. 9.
- 42.37 “[통일] “남한 쌀-북한 잡곡 분업체제를”. 이태희 기자.
1997. 9. 28.
- 42.38 “[환경] 생태계보전협력금 99년부터 징수”.1997. 8. 1.
- 42.39 “[강원] 비무장지대 관광객 급증”. 1997. 7. 15.
- 42.40 “[환경부] 비무장지대 보전 법제화 추진”. 1997. 7. 6.
- 42.41 “[김 대통령] 유엔환경특총서 DMZ 보존 위한
남북한 협력 제의”.김종구 기자.1997. 6. 24.
- 42.42 “[비무장지대] 생물다양성 보전지역 지정 등
평화적 이용 제안”. 김보협 기자.1997. 6. 3.

- 42.43 “[한겨레창/민통선] 김진애 세추위위원-환경보전이 우선이다”.
정재권 기자.1997. 5. 31.
- 42.44 “[한겨레창/민통선] ‘개발’이나 ‘보전’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정재권 기자.1997. 5. 31.
- 42.45 “[지영선 칼럼] ‘접경지역’은 살아있다”. 1997. 5. 22.
- 42.46 “[세추위] 휴전선 일대 자연환경보전 위주
관리대책 마련키로” 안재승 기자 1997. 5. 21.
- 42.47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 김정수 기자.
1997. 5. 15.
- 42.48 “비무장지대 개발의 득과 실”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교수)
1997. 5. 12.
- 42.49 [통일] DMZ학술회의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개발하자”.
김종화 임을출 기자.1997. 4. 28.
- 42.50 “[통일] 통일원, 접경지역개발 조사착수”. 임을출 기자.
1997. 4. 27.
- 42.51 “[환경] 남북한 환경협력 시급하다”.정광섭 기자.1997. 4. 13.
- 42.52 “[통일/기고] 남북 협력분야 넓혀있다”.김성훈 농림부장관
1997. 4. 6.
- 42.53 “[비무장지대] 통일대비 체계적 개발”.1997. 3. 14.
- 42.54 “[한방] 의개위 통합의학연구소 설립 건의”.안종주 기자.
1997. 2. 13.
- 42.55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경작 주장”.김종화 기자. 1997.2.12.

42.56 “휴전선 접경, 건드리지 마” 라는 제목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의 원칙을 새삼 강조하는 전면특집을 다루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기본구 상안을 주관한 건축가 김진애와의 인터뷰, 1997.5.31

< 이상 한겨레신문 기사 모음 >

Abstract

A Study on Ecology Preservation & The Land Utilization of DMZ and It's Borders

Lee, Ki Sup

Major in Real Estate

Dep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global mood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our entering the 21st century facilitate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MZ that had divided Korean people ideologically will disappear before long. It is easy to expect that, with removal of the DMZ and dissolution of military confrontation, demand for development of the borders around the DMZ will be overheated under the pretext of both solving the problem of overpopulation and preparing an advance base for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onsidering that full recovery of an ecosystem destroyed by a war takes nearly 100-120 years, the trees currently inhabiting the DMZ are merely 20 years old. Thus, an ecosystem in there is still in its infancy and it is the only area that allows research on the effects of war on ecosystem. Therefore, what is in greatest concern now is to consider preserving the DMZ's ecosystem by utilizing its

South due to cultural, ideological and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will prevent the social shock that may be created by unifying the cultural, ideological and economic gap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enact a comprehensive master plan in advance so that such management plan can be put into operation promptly after reunification in order to prevent political and social chaos from arising in opposition to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gain the people's consent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to manage the DMZ and its borders as a national heritage and to fully nationalize these areas. Nationalizing these areas is imperative even if it may limit those basic private property rights that are fundamental to a democratic welfare state. Also, we should formulate a plan to convert Korea from a country lacking natural resources to a nation of tourist attractions and rich ecological resources by utilizing those biological and ecological resources already present in the preservation area. Revenue raised from such tourism will help enable compensation for nationalized land, financial aid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rea that is presently North Korea and the costs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the areas ecosystem.

In the development phase, a step-by-step development plan shall be established to minimiz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ccess to ecology preservation areas in some sections of the borders, including the DMZ, should be prohibited. Only existing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roads and railroads should be allowed. However, a method to establish overpasses through the

DMZ should be considered, as long as it is technically viable. With respect to development of the area, we should cultivate world-class tourist attraction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nd developing such diverse development models as special areas for security, ecosystem preservation, tourism and recreation, and nature studies.

In promoting the aforementioned plan, policies should neither be partial nor misrepresentative. To prevent this,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organizing a national supervisory system if necessar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the chaos that may occur after reunification even before the said event. Thus, it is wise that the highest executiv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draw up a mutually agreed protocol based upon suggestions made on specific alternatives of a plan for peaceful utilization of DMZ area in order to prevent such chaos after reunification.

However, it was only recently that the ecosystem of the DMZ was surveyed and unfortunately, the results are not very accurate thus far. In addition, it is the second limitation of this paper that information on the DMZ and its borders in North Korea could not be used because the information was not disclosed. Thus,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again that information is limited because access to the borders of military zone was restricted and a lot of aspects could not be disclosed due to military confidentiality.

In addition, a basic premise of this paper, nationalization of the lands in the DMZ, cause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Korea's ecosystem after the war, however, it is necessary to draw a conclusion that will both harmonize people and is reasonable. Therefore, more studies are required by experts on how to devise a plan where landowners are compensated appropriately.